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백혜련·이수진·김원이
이주희·송재봉·박지원
전현희·민홍철·부승찬
맹성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·대여·배포 등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, 그 중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,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근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,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,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아동·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).

법률 제 호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항 및 제7항 중 “제1항”을 각각 “제1항부터 제5항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<u>제1항</u>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</p> <p>⑦ 상습적으로 <u>제1항</u>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</p>	<p>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제1항부터 제5항까지</u>----- -----.</p> <p>⑦ -----<u>제1항부터 제5항까지</u>----- ----- -----.</p>